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1328
-----------	------

2023. 12. 19.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0. 13. 박승진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 10. 23.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5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12. 19.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박승진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빅데이터심의회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빅데이터심의회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7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확대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 10월 13일 박승진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검토의견

- 디지털정책관(빅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빅데이터 분석 및 민·관 데이터 융합개발·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 ‘빅데이터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1)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2)와 관련된

1)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시장이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2조(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현행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정책관 소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현재 디지털정책관에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4개로, 이중 빅데이터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존속기한을 두고 있음.

<디지털정책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근거		존속기한
	법률	조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없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7.7.12.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없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7.12.31.
스마트도시위원회	없음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27.12.31.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없음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없음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먼저, 위원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위원회는 설치 이후 현재 ('18.3.~'23.6.)까지 총 7회 개최되었는데 '21년도까지는 매년 1회 개최되었으나 '22년도부터 연 2회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이 점차 확대된 것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운영실적 증가와 달리 심의위원 참석률은 평균 58.7%(8~9명)로 저조한 실정이며, 제3차~5차 회의에는 당연직 내부위원이 단 1명만 참석하였고 제7차 회의에는 위촉직 외부위원이 5명만 참석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되는바,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에 앞서 심의위원의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빅데이터위원회 위원 참석률>

구 분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제3차 회의		제4차 회의		제5차 회의		제6차 회의		제7차 회의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참석자 수	3명	6명	3명	5명	1명	9명	1명	7명	1명	7명	2명	9명	3명	5명
	총 9명		총 8명		총 10명		총 8명		총 8명		총 11명		총 8명	
참석률	60.0%		53.3%		66.7%		53.3%		53.3%		73.3%		53.3%	

※ 빅데이터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

<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실적>

위원회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이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공공데이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데이터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구성	<p>▶ 총 15명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4명(디지털정책관, 교통기획관, 환경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 11명(서울시의원,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및 교수 등)

위원 자격	▶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회 추천 시의원,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존속기한	▶ 명시되지 않음
운영실적	<p>▶ 2018.3.29. 1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빅데이터 시행계획 심의 - 공표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적정성 심의 - 전문분야별 심의·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심의 - 데이터 통합 활용 체계 구축 기본계획 자문 <p>▶ 2020.4.12. 2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빅데이터 시행계획 보고 - 개방 심의 관련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p>▶ 2020.11.16. 3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빅데이터 정책시행 추진경과 보고 - 서울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논의 <p>▶ 2021.10.29. 4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등 심의 -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 자문 - 시민참여형 데이터 분석체계구축을 위한 스마트서울 펠로우십 추진계획 자문 <p>▶ 2022.6.9. 5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빅데이터 시행계획 심의 - 서울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 자문 - 빅데이터 융합·분석 현황 및 추진계획 자문 - 데이터 개방 현황 및 계획 자문 <p>▶ 2022.12.28. 6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심의 - 빅데이터·AI 기반 실시간 도시데이터 고도화 계획 보고 -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2단계)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 대시민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사업 결과보고 <p>▶ 2023.7.7. 7차 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 심의 - 디지털시장실 전면개편 추진현황 보고 - '23년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 계획 - '22년 서울시 데이터활용 역량진단 결과 보고

※ 빅데이터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빅데이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관련규정(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에 따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시민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빅데이터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 2월 31일까지로 한다.</u>